##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189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이만희·구자근·서천호

김기웅 · 엄태영 · 강선영

서지영 · 조은희 · 권영진

이종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 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 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⑧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